

# 하남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2405
----------	------

제안연월일 : 2022. 2. 11.

제안자 : 김은영 의원

## 1. 수정이유

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선임하는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명  
확히 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결산검사위원의 정수 “3명 이상 10명이내” 를 “7명으” 로 수정함  
(안 제2조)

## 3. 수정조례안 : 덧붙임

## 4. 수정안 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하남시 조례 제 호

## **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**

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2조 중 “3명 이상 10명 이내” 를 “7명으” 로 한다.

『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과 같음』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 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 제3항----- 제83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----- ----- ----- -----.</p>	<p>제1조(목적)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2조(결산검사위원의 정수) 위원회의 정수는 5명으로 한다. 이 경우 하남시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은 감사위원수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.</p>	<p>제2조(결산검사위원의 정수) 결산검사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의 정수는 <b>3명 이상 10명 이내</b>로 한다. 이 경우 하남시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은 감사위원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되, 3명을 초과할 수 없다.</p>	<p>제2조(결산검사위원의 정수) 결산검사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의 정수는 <b>7명</b>으로 한다. 이 경우 하남시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은 감사위원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되, 3명을 초과할 수 없다.</p>
<p>제3조(선임방법 및 절차) ①·② (생략) ③ 위원은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 규정에 의해 본회의 의결로 위원을 선임하고 하남시장에게 알린다.</p>	<p>제3조(선임방법 및 절차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73조에 따라 --- ----- -----.</p>	<p>제3조(선임방법 및 절차) ①·② (개정안과 같음) ③ (개정안과 같음)</p>